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2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김예지 · 박덕흠 · 최수진
안철수 · 김용태 · 서천호
주호영 · 김승수 · 조경태
김선교 · 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 · 급식 · 진료 · 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 · 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0조, 제17조 및 제17조의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노숙인복지시설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이하 “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입소자의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성범죄(이하 “폭행

등”이라 한다)를 행한 경우

③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폭행등이 반복될 위험을 방지하고 폭행등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해당 입소자를 폭행등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조치를 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해당 입소자에 대한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소·퇴소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퇴소심사가 요청된 입소자의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입소자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자 및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입소자를 퇴소시켜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숙인복지시설 퇴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퇴소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 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 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제10조(주거지원)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 회복지시설”이라 한다)----- ----- -----
3. ~ 5. (생 략) ② (생 략)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 · 퇴소 등) ① · ②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 · 퇴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 ----- ----- ----- ----- --- <u>입소 · 퇴소심사위원회를 두 어야 한다.</u>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노숙 인 등의 입소 · 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轉院)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 여 <u>입소 · 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④ · ⑤ (생 략) <u><신 설></u>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노숙인복지시설 퇴소

의 기준 · 방법 · 절차)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이하 “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입소자의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성범죄(이하 “폭행등”이라 한다)를 행한 경우

③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폭행등이 반복될 위험을 방지하고 폭행등 피해자의 신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해당 입소자를 폭행

등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조치를 하고, 폭행
등이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
내에 제2항에 따라 해당 입소
자에 대한 퇴소심사를 요청하
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
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
소·퇴소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퇴소심사가
요청된 입소자의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
항에 따라 입소자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p><u>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생략)</u></p>	<p><u>⑦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자 및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입소자를 퇴소시켜야 한다.</u></p> <p><u>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p> <p><u>제17조의3(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u></p>
--	--